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④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사업제안서 제출 제한의 범위만 여부

Q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차별취급에 대한 사업제안서 제출제한이 법을 위반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계약법제7조에 의하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격제한 등을 함에 있어 공정거

래법의 관계규정이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지역 사업자만을 참여 또는 배제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 물론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 정당한 이유로 필요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도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

2. 공동도급의 하도급거래금액의 지분

Q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조서 작성 시 하도급거래금액을 주관회사가

전부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원사별로 자기 지분만큼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A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했을 경우(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체결) 주관사가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회원사의 지분비율 만큼 각각의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어음할인료 포기 공문을 받은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

Q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조서표 작성 시 하도급거래금액을 주관회사가 전부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원사별로 자기 지분만큼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A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이 발생하여 기성 청구를 받아 매월 2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A업체의 계약상 이행조건인 계약이행증권의 미이행 또는 A업체에 대한 기성채권가압류 등으로 인해 기성지급(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짜리 어음발행)을 유보하게 되었다.

사실, A업체의 계약불이행이나 회사 채권가압류 등의 원인으로 기성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지급일 기준 전에 모든 불이행 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청구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A업체에서 조건을 기준으로 해소하지 못해 15일정도 경과된 다음에 해소하여 기성지급요청을 하였다.

이때 당사에서는 기성집행에 대해 어음을 지급일 기준으로 밖에 발행할 수 없어 지급일로부터 60일 짜리 어음을 받고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약 15일간의

지연이자에 대해 업체의 문제로 인해 이자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때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가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A 이 질문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 내용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은 예측불가능한 계약이행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유보할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 포기 공문을 받아두었다 할지라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4. 하도급법 상 금지하는 부당반품

Q 어떤 경우가 하도급법 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반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부당반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하도급법 상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